

『희망키움통장』 특약

제 1 조 적용범위

『희망키움통장』(이하 "이 예금"이라 함)의 거래에는 이 특약 외에 『예금거래기본약관』, 『적립식 예금 약관』, 관련 법령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4(자산형성지원),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 2(자산형성의 대상 등)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 32조의 4(자산형성지원의 신청 등)에 근거한 보건복지부 『희망·내일키움통장 사업 운영 지침』(이하 "운영 지침"이라 함)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

제 2 조 가입대상

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지방자치단체, 중앙자활센터, "운영 지침"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은행에 가입 승인을 통보한 실명의 개인(이하 "고객"이라 함)을 대상으로 합니다.

제 3 조 예금과목

이 예금의 예금과목은 상호부금으로 합니다.

제 4 조 약정기간

이 예금의 약정기간은 고객은 36개월, 중앙자활센터 및 지방자치단체는 38개월로 합니다.

제 5 조 최소가입금액

이 예금의 최소 가입금액은 고객은 5만원 또는 10만원으로 지정하며(추후 변경 불가),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자활센터는 0원 이상 원단위로 신규합니다.

제 6 조 불입 및 적립방법

고객은 매월 1회, 일정일(전월 23일부터 해당월 22일까지로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까지)에 한해 최소 가입시 지정한 금액(5만원 또는 10만원)만 입금 할 수 있습니다. 단,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자활센터는 적립금액 및 적립 횟수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근로소득장려금, 정부지원금, 민간 매칭금(이하 "적립금"이라 함)을 입금 할 수 있습니다.

제 7 조 적립금 지원대상

이 예금에 가입하여 월 불입금을 납입하고 있는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합니다.

제 8 조 적립금 지원금액

- ① 지방자치단체가 적립하는 근로소득장려금은 운영 지침에 따라 산출되며,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월 적립하여 고객이 "운영 지침"의 요건 충족 시 일괄 지급합니다.
- ② 중앙자활센터는 제1항의 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된 달에 한하여 "운영 지침"에 따라 산출된 민간 매칭금을 적립하여 고객이 "운영 지침"의 요건 충족 시 일괄 지급합니다.

제 9 조 불입 및 적립중지

- ① 실직,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·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, 고객은 약정기간 중 3회에 한하여 불입 중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, 총 불입 중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 또한 불입 중지기간 중 적립금은 적립되지 않습니다.
- ② 고객의 불입금이 입금되지 않은 월에는 적립금은 적립되지 않습니다.

제 10 조 우대금리

이 예금 가입 후 다음 각 호의 거래실적이 있는 경우, 은행은 고객 명의의 불입금에 대하여 최대 연 0.8%의 우대금리를 계약일 당시 고시한 금리(중도해지 금리 포함)에 더하여 지급합니다.

- ① 이 예금 가입 후 3개월 이내에 고객이 지정한 날에 고객 명의의 KEB하나은행 입출금계좌에 타인으로부터 50만원 이상 급여 이체된 경우 또는 국가 생활 7대 보장성급여(생계급여, 주거급여, 자활급여, 장애급여, 의료급여, 교육급여, 해산급여)가 이체된 경우 (연 0.5%)
- ② 이 예금 가입 후 3개월 이내에 하나카드 체크(신용)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경우 (연 0.1%)
- ③ 이 예금 가입 후 3개월 이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국민주택기금대출을 보유하고 있거나 고객 명의의 KEB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하여 2건 이상의 자동이체(공과금, 관리비, 통신료, 보험료 등) 거래를 한 경우 (연0.1%)
- ④ 만기까지 매 회차 한번의 미입금 없이 총 36회의 불입금이 모두 입금되는 경우 (연 0.1%)

제 11 조 해지방법

- ① 고객은 지방자치단체에 희망키움통장 해지신청을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“운영지침”의 해지 사유에 따라 은행에 해지 승인 통보를 한 경우에 한하여 이 예금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근로소득장려금은 은행에 해지 승인 통보 시 지급되며, 중앙자활센터가 지급하는 민간매칭금은 매월 5일(근로소득장려금 해지일 전월 21일~당월 3일인 경우)과 매월 20일(근로소득장려금 해지일 당월 6일~당월 18일인 경우) 고객이 지정한 KEB하나은행 입출금통장계좌로 지급됩니다.
단, 5일과 20일이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해지가 가능하며, 민간매칭금 해지 당일 및 전영업일에는 근로소득장려금 해지가 불가능합니다.

제 12 조 이자 지급방법

- ① 이 예금의 만기해지 시 은행은 각 불입금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고시한 금리에 우대금리를 더하여 썸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합니다.
- ② 이 예금의 중도해지 시 은행은 각 불입금마다 입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고시한 중도해지금리로 썸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합니다.
- ③ 고객이 만기일 이후 예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, 은행은 만기일로부터 만기 후 1개월까지는 계약일 당시 고시한 금리를, 그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는 지급일 현재 고시된 3년제 상호부금 약정금리의 1/2을 적용하여 썸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합니다. 이 경우 제 10 조의 우대금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
-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 11 조 제3항의 특별중도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, 은행은 각 불입금마다 제1항에 의한 금리로 썸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합니다.

제 13 조 적립금 지원조건

- ① 이 예금이 해지되는 경우, 적립금은 “운영 지침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승인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객에게 지급됩니다.
- ② 고객은 적립금을 “운영 지침”에서 명시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, 그 증빙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 적립금 지급 요청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제 14 조 양도 및 담보제공의 제한

이 예금은 양도 및 담보제공이 불가능합니다.

제 15 조 부가서비스

고객이 KEB하나은행 입출금통장에서 이 예금계좌로 매월 자동이체를 통하여 불입금을 입금하는 경우, 은행은 익월 첫 영업일부터 다음 각 호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매월 총 10회씩 면제합니다. 단, 은행은 가입월 및 그 익월까지는 자동이체 여부와 관계 없이 매월 총 10회씩 수수료를 면제합니다.

- 1) 전자금융(자동화기기, 폰뱅킹, 인터넷뱅킹, 모바일뱅킹) 타행 이체거래
- 2) 자동화기기를 통한 마감 후 현금인출 거래

제 16조 기타

- ① 위 특약 사항 변경 시 은행은 변경사유, 변경내용 등을 변경시행일 직전 1개월 동안 은행 홈페이지 및 영업점에 게시합니다. 단, 고객에게 불리한 변경 시에는 예금거래 기본약관 제21조 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알리기로 합니다.
- ② 적립금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“운영 지침”이 적용됩니다.